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간주처리 예산 편성 부적정

관계기관 대송중학교

내 용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회계 연도 말 회계사무 처리 준수에 따라 회계연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종료 후 추가경정예산(간주처리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있고,

간주처리 예산은 통상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듬해 예산안 심의가 마쳐지게 되는 2월 이후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월 말이 되기 전에 다시 모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 조치로서 간주처리 예산 편성 후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송중학교에서는 2021.2월 말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1,092천원을 간주처리 예산 편성하면서 회계기간 종료 후 2021.3월에 예산 확정하였으며, 간주처리 사유 및 내용을 다음번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송중학교장은

- ① 앞으로 학교회계 예산 편성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회계 계약 업무 소홀

관계기관 대송중학교

내 용

1. 공사용 공공요금 미 징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공사원가의 체계상 “경비”는 공사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순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포함)를 말하며,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공자가 학교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외로 한다.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 알림(경기도교육청 시설과-14334(2008.12.15.)호)」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기준은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비교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전기 및 수도 사용료 분석 결과 공사금액 대비 0.11%~0.14%사용(평균 0.12%))

그런데 대송중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대송중 외부 벽체 도장 공사’ (계약금액 54,470,000원)을 실시하면서 공사원가 계산서에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학교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65,360원(평균 부과율 적용)을 징수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하자보수 보증금(서) 징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1항 제3호 다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하며,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송중학교에서는 2020년도 시행된 외부 벽체 도장 공사(공사금액 54,470,000원)등 2건의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서)를 보증기간의 초일을 준공검사 완료한 날이 아닌 준공검사원 제출일로 잘못 지정하여 징구한 사실이 있다.

3. 계약보증금(서) 징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의거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납부)에 따라 ‘별지 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대송중학교에서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서 징구 시 계약이행기간이 실제 계약이행 기간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하여 계약보증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대송중학교장은

- ① 앞으로 학교회계 계약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관계기관 능곡고등학교

내 용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2(회의소집),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회의소집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능곡고등학교는 2020년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에 있어 각 위원에게 안건 송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능곡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회계 물품 구매 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기관 호곡중학교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금액기준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장치에 의한 2인 이상의 견적 제출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수요물자가 제3자를 이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호곡중학교에서는 교원용 노트북을 구매함에 있어, 노트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이 3자단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또는 2인 이상 소액수의 견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학교장터 쇼핑몰(www.s2b.kr)을 통해 구매하여 물품 구매 계약업무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호곡중학교장은

- ① 앞으로 학교회계 물품 구매 관련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